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2024. 3. 27.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4년 3월 27일(수) 14:00~19:07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윤 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4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2024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51호 『서울신용평가(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52호 『지큐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저는 안건 자체에는 의견이 없습시다만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시기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시기와의 약간 겹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못해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채무불이행적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제재를 가하는 성격이어서 이것이 위반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사실관계를 듣고 싶음.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안건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음.
  
- (보고자) 사실 이 집합투자규약 위반은 전산상으로 다 위반 내역이 나타나는 사항임. 그런데 이 회사는 실제로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공모기업 감소, 이런 이유로 회사는 주장을 하고 있음. 그리고 일부 판매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성 보유 등을 고려했다, 이런 측면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서는 이것이 어차피 고객과의 약속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산상으로도 위반내역이 적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로서는 위반동기를 '상'으로 양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에 이견은 없음. 다만, 향후에 안건을 보실 때 정말 충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인지,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유한책임투자자(LP)들의 민원이

나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도 같이 적시를 해 주시면 안전심사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어떻게 보면 이 계약 자체를 위반한 것은 계약당사자끼리의 사적 자치의 원리인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행정제재를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계약위반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귀책사유가 이 사람한테 있느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보는데, 행정제재를 함에 있어서는 그 동기나 과정을 묻지 않고 일단 위반하면 무조건 제재다, 이것은 이 조항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한 번 더 나아가서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안전에 적시를 해 주시면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음.

○ (위원) 저는 다른 의견 없음.

○ (위원) 저는 다른 의견 없음.

○ (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고, 제가 자본시장국장을 할 때 코로나19 시기였는데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도 그러한 상장 이슈(issue), 상폐 요건들을 코로나19 시기에는 여행업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부분이 있음. 향후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람. 제52호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3호 『한일퍼스트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저는 집합투자규약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안건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본 건과 관련해서 22페이지의 위반결과 부분에서 이 건은 앞의 건과 달리 원리금 연체, 부실발생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보통’으로 보셨는데, 그 앞부분 있는 ‘벤처비율 위반으로 세제 혜택 및 IPO 우선배정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손실보다는 그런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의 안건도 사실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의 것을 ‘경미’로 하고 이것을 ‘보통’으로 할 때 이 부분은 뒤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연체가 발생했다’는 차별화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써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같이 ‘보통’ 사유로 써 주면 앞의 것과 약간 맞지 않고 앞서서 이와 유사한 안건을 처리할 때 직접적인 손실이 아니라 투자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움. 손실발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제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의 경우에는 30% 미만 보유이지만 대표이사 임명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봐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신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이렇게 판단한 규정이나 기존의 조치사례들이 있는지?

- (보고자)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30%에 미달되는 구조로 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원이나 계열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을 주로 판단해서 조치를 했던 사례는 많이 있음.

- (보고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 법률이 안 붙어 있는데, 대주주의 정의와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지배구조법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인용하게 되어 있고 그 지배구조법에 보면 배우자와 같은 특수관계인과 합해서 임원의 임명 등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음. 규정은 그쪽에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4호 『(주)하나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앞선 조치선례의 기준에 맞춰서 안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서 저는 다른 의견 없음.

○ (위원) 저도 다른 의견 없음.

○ (위원) 저도 의견 없음.

○ (위원장) 저도 안건을 보니까 범상 10배 과태료 감경 이슈 (issue)가 있는데 이미 선례가 많이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음. 제54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5호 『(주)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위원님들, 금감원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람.

○ (위원) 보호예수가 풀리자마자 바로 매도한 경우여서 진술인의 진술을 듣기 전에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듣고 싶음.

- (보고자) 악재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모르고 내부자들은 알고 있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음.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는 영업이익 정보를 취득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둘째로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

○ (위원) 보호예수가 풀렸다고 해서 매도를 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지?

▶ (진술인) 미리 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팔았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원안에 의견 없음.

○ (위원) 저도 원안에 동의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6호 『(주)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 함.

⇒ 원안접수\*함

\* 만장일치로 원안접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56호 『OOOOOO(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건과 유사한 시리즈 건은 여러 건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와 관련해서 ‘고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제재 규정상 본 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함. 그런데 그 ‘고의’는 증권발행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당사가 “동일한 증권”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임. 만약 당사가 발행 당시에 “동일한 증권”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고의’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거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그러면 지금부터 이를 전제로 해서 당사가 본 건 DLS발행 당시에 “동일한 증권”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본 건 DLS는 ㄷㄷㄷㄷ (이하 ㄷㄷㄷㄷ)라는 해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었는데 개별 금(gold) 거래가 있을 때마다 해외운용사에서 해외펀드를 설정하면서 투자를 요청하면 당사가 DLS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구조였음. 캡처된 E-mail을 봐 주시기 바람. 개별 금(gold) 거래가 있을 때마다 해외운용사에서 구체적인 일

정을 지정하여 투자요청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당사는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두고 의도적으로 쪼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때그때 요청에 따라 발행한 것임. 각 해외펀드는 SPV에 자금을 대여하면 그 자금은 개별 금(gold) 거래의 신용장 발급을 위해 글로벌뱅크에 담보로 제공되었음. 그리고 각 개별 금(gold) 거래 별로 하나의 신용장이 발행되었음. 그림은 운용사에서 제공한 해외펀드 제안서에 있는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린 자금흐름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음. 그리고 당사가 해외펀드 자금집행을 승인할 때 해외운용사가 제시한 자료도 해외 펀드별로 개별 금(gold) 거래를 전제로 승인을 요청했음. 이를 토대로 당사는 각 해외펀드의 자금은 개별 금(gold) 거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 이와 같이 당사는 개별 금(gold) 거래 별로 해외펀드가 설정되고 운용되므로 해외 펀드별로 기초자산이 다르다고 인식했던 것임. 하나의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본 건 DLS 회차가 3개에서 4개가 되었는데 해외 펀드별로 투자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한 것임. 즉, 저희는 공모규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가 “동일한 증권”이라고 인식한 것을 토대로 투자자의 수를 조정했음. 결론적으로 당사는 각 해외 펀드별로 기초자산이 나뉜다고 생각을 했고 본 건 DLS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증권”이라고 추호도 인식하지 못했음. 즉,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 그런데 금감원은 당사가 본 건 DLS 전체를 “동일한 증권”으로 인식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음.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시간관계상 대표적인 것 두 개만 말씀을 드리도

록 하겠음. 처음 보셨던 구조도를 보면 우선 금감원은 SPV가 한 개여서 자금이 혼장되었으므로 모두 “동일한 증권”으로 인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음. 그런데 SPV는 해외펀드가 외국법령상 신용장을 직접 발급 받지 못해 신용장 발급을 위해 설립한 도구에 불과했음. 투자 대상인 기초자산이 아님. 그리고 해외펀드의 자금은 신용장 발급을 위해 글로벌뱅크에 바로 담보로 제공되었음. 즉, 발행 당시 자금이 혼장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음.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당사가 판매사 설명회에서 4월, 5월, 7월 진행했을 때는 1억불까지 진행하기로 했었고 이번에 2차 모집 때는 1억 5,000불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보면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의도적으로 쪼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 그런데 1억불, 1억 5,000불 관련 내용은 전체적인 발행계획이 아니고 당사의 내규상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말씀드린 것에 불과함. 전체적인 계획 하에 쪼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 그 한도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했음. 제재규정에 따라서 고의가 있으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행위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 통보’ 조치는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조치에 해당함. 따라서 고의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의도적인 쪼개기가 있거나 아니면 “동일한 증권”으로 인식하면서 명백히 공모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정황 등이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런데 본 건 DLS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사는 의도

적으로 쪼개기를 한 것도 아니고 “동일한 증권”이라고 인식하면서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 사후적으로 볼 때 “동일한 증권”에 대한 당사의 법적인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 그런데 당사는 발행 당시에 “동일한 증권”이라고 인식한 대로 오히려 공모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투자자의 수를 조정하는 등 노력했음. 그럼에도 당사가 본 건 DLS 전체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임. 결론적으로 본 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당사의 고의에 대한 판단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사기관 통보’ 조치는 제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견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동일한 증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EEE 차장께서 2019년 5월29일에 신용평가사에 DLS 평가를 요청할 때 시리즈 DLS의 기초자산이 모두 동일하다고 언급하신 바가 있고 또 동년도 10월28일에 자사 영업부서에 DLS 상품구조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동일한 증권”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
- ▶ (진술인) 시리즈 기초자산이 동일하다는 것은 해외펀드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해외펀드의 투자구조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투자구조는 다 동일함. 그런데 각 DLS별로 각 해외펀드가 별개로 설정되고 개별 금(gold) 거래에 따라서 그 해외펀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

에 각 해외 펀드별로 기초자산이 다르다고 인식을 했던 것임.

○ (위원장) 진술인 얘기하실 때 공모규제 준수를 위해 투자자의 수를 조정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공모규제를 안 받으려고 쪼개기 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닌지?

▶ (진술인)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 DLS가 3개 회차, 4개 회차 이렇게 발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각 펀드별 기준으로 해서 3개 회차, 4개 회차가 발행되었음. 그래서 저희는 각 펀드별로 이것이 다 다른 증권으로 생각을 했었음. 그래서 하나의 펀드별로 49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을 한 것임. 그때 당시에 저희의 인식은 각 해외펀드가 기초자산이고 그 해외 펀드별로 49인이 초과되지 않으면 공모규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저는 이 안건에 대해 원안에 이견 없음.

○ (위원) 저도 원안에 동의함.

○ (위원) 저도 원안에 동의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7호 『키움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8호 『SK하이닉스(주)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시스템적인 실수가 아닌 단순실수로 보아 ‘과실’로 본 것인지?

- (보고자) 맞음. 포트폴리오매니저의 입력착오가 주요 원인으로 봤음.

○ (위원) 저는 이견 없음.

○ (위원) 저도 자조심 수정심의안에 동의함.

○ (위원) 저도 수정심의안 동의함.

- (위원) 제58호 안건은 자조심 심의(안)대로 추가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의결안건 제59호 『(주)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감리위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지금 공모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회계사분이 재무재표 작성은 물론 실제 감사에도 참여를 해서 감사인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감리위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맞는지?

- (보고자) '고의'의 경우에는 '고의' 입증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음.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첫 번째는 2022년도 이후에 실제로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인원도

없고 회사 관리인원도 모두 퇴사를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지금 파산이 예상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는데, 과징금이나 구체적인 징계를 하심에 있어서 참작을 하여 주시기 바람. 두 번째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분은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위반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산정된 바 있음. 감사의 경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도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임.

- ▶ (진술인) 처음 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제 나름대로 외감법과 다른 감사반의 동일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2021사업연도가 끝나고 나서 감사를 그만둔 것도 독립성 위반을 제가 인식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고 회사의 규모가 너무 커졌으니까 저는 감사를 못 하겠다고 해서 2022년도부터 감사를 하지 않았던 사안임.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계속감사를 했다, 독립성 위반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두 번째는 기본적인 감사절차는 수행을 했는데, 이 정도의 분석을, 과연 내가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듦. 또한 가지는 OOO 회계사가 감사에 참여했다고 결론을 내리신 부분이 있는데, 2019년 재고입회 서명에 OOO 회계사의 서명(sign)이 있었음. 이는 8년 동안 그 재고조사 1번에 국한된 것으로서, 그 당시 OOO 회계사가 운전이 어려운 저를 대신해 현장으로 데려다주었고, 제가 감사하고

올라오면서 000 회계사에게 “이것 내가 했고 서명(sign)한 것을 봐봐” 했는데 본인 서명(sign)을 하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서명(sign)한 것이 아닌가 싶음.

- ▶ (진술인) 같은 감사반의 000 회계사이고 2013년부터 회사에 대한 기장을 했는데 제가 독립성 위반 때문에 법규정을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규정 자체가 없었고 2018년도에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작년에 조사 받을 시기에 알게 된 것임. 그리고 제가 감사에 참여했다고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감사를 하신 회계사님이 운전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부탁을 받아서 회사까지 간 것은 인정 하지만 저는 재고실사에 절대 참여한 적은 없었음. 2019년 서명 그 하나로 8년치 감사에 모두 일부 참여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같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감사라는 직위 자체가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감사가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안에 이견 없음.
- (위원) 감사가 이 경우에는 분식회계를 인지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 것인지?
- (보고자)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고, 감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하였음.

- (보고자) 부연설명드리면 외감법 제35조에 과징금 부과 관련한 요건사실로써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것으로 감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원안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음.
- (위원) 알겠음. 보고서 언급하신 감경(안)에 동의함.
- (위원)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음.
- (위원) 저도 동의함.
- (위원장) 제59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동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당기 순손실,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액(가압류 및 담보 제외)이 부과예정과징금의 100% 미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과징금부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회사로 판단됨. 이에 외부감사규정 양정기준상 과징금 감경사유인 그 밖에 일관된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적용하여 회사의 과징금을 원안에서 30% 추가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회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회사 과징금 한도를 적용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맞추어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60호 『OOOOOOO(주)의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61호 『OOOO(주)의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62호 『OOOOOOOOO(주)의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63호 『OOOOOOOOO(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64호 『OOOO(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OOOOOOOOO(주)와 □□□□□□□□(주)에 대한 동기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대상 회사들은 모두 비상장사이며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 4배 미만임에도 회계처리위반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보 등으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하였으나, 비상장사이며 100% 단일주주이고 차입금 잔액도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도 제한적인 회사의 회계처리위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들 회사에 대한 舊양정기준 적용 시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보아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규모조정계수 산출특례를 적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적단계가 1단계 상승되었음. 그런데 사회적 물의요건의 판단에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규모, 과거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기에 비상장법인 특례를 적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OOOOOO(주) 그룹감사인에 대하여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으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담당이사가 상이하였고 연결 절차와 별도재무제표의 감사절차는 완전히 상이하는 등 그룹감사인의 위법동기는 당연히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인은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충분한 감사절차를 거래 단계별로 누락 없이 수행하였고 타 건의 경우 계열사 자금 동원내역을 발견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로 공시하도록 권고한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한 모든 절차를 취했다고 판단한 점 감안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위원) OOOOOOO나 OOOOOO(주)이나 그룹임원과 면담, 자료요청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야기한 것을 믿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 (진술인)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마지막으로 OO은행의 승인문서가 있다는 점이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함.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임.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000를 비롯해서 회사관계자들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금융감독원이 현재 말씀하시는 복잡한 형태의 회계처리는 회계전문가조차도 그와 같이 착안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방식임. 또한, 00000의 BW 투자내용과 기내식 공급계약은 당시 모두 공시되었던 내용으로 단순히 회계처리에 있어서 이런 사실을 숨길 수도 없었음. 또한, 000000(주)이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기에 더 숨길 이유도 없었음. 근본적으로 형사법의 시각에서 횡령·배임죄 유죄 여부 결론과 회계처리상의 잘못 유무, 고의 유무의 판단은 별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 (진술인) □□□임. 저는 이 건 기내식 계약 및 BW계약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 혐의에 대해 저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기소도 되지 않았음. 감사는 회계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역할을 맡지만 아주 세부적이고 세세한 회계처리에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음. 만약, BW발행이 기내식 공급계약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까지 감사로서 일일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최대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피조치자들에 대해서 동기판단을 '고의'로 보는 이유는 대부분 형사재판 1심 판결문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형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고의 판단근거이며 회사의 외감법 위반 동기는 오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금감원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인정되어야 하며, 신주인수권 가치 중에서 어디까지가 대가로 인정되어서 당기이익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한 것임. 다시 말해 금감원 주장은 OOO그룹의 BW 인수가 OOOOOO(주)의 기내식 공급계약과 연계하는 이면계약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 전부를 당기이익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기준서 어디에도 대가가 인정되면 신주인수권 가치를 무시하고 당기이익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음. 또한 콜옵션이라는 것은 가치가 "0"이 아닌 이상 옵션가치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 회사 관계자가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모두 무시하고 이익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번 의견진술은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하겠음.

○ (위원) BW 발행액 중 대부분은 만기가 20년임. 그러면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도 20년이라는 말임.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그 당시의 행사가격이 주가의 1.5배 수준이라고 해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0"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 (보고자)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20년으로 길다는 것이 오히

려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보다는 회사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발행 조건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조건이었고,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 제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었던 부분이 있음.

▶ (진술인)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이 20년 장기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들어본 적도 없고 20년 동안 변동성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있을 것임. 그렇기 때문에 20년 장기여서 이상하니까 가치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함.

○ (위원) BW를 발행한 쪽과 BW를 인수한 쪽 그리고 독점 기내식을 계약한 OOOOOO(주) 세 당사자 중에 손해를 본 쪽은 없는지?

- (보고자) 이 계약구조를 만든 당사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승객 여부라든지 매출에 따라서 손익관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애초부터 이 계약구조 자체만으로 OOOOOO(주)은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 OOO그룹이 훨씬 큰 이익을 받고 그것을 OO에 나누어줬다는 논리는 당초에 계약 당사자들이 생각했던 의도가 전혀 아님.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과연 OOOOOO(주)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아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추가증거가 제출되어야 한 바 있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감사인은 이 계약이 일괄계약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이면계약의 존재가 은폐되었으며 대가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금융감독원도 인정하고 있음. 또한, 1심 판결문에 따를 경우에도 이면계약은 OOOOOO(주) 대표이사도 몰랐던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고, OOOOOO(주) 임원의 E-mail에서 나온 내용까지 확인하여야만 가능한 회계처리라면 그런 부분은 행위판단기준에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위반은 더 인식하거나 수정할 거래가 없는 전형적인 계정 오분류에 해당하는 D유형으로써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의 중요성 기준에서 오류의 유형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융기관조회서를 발송 확인했고 약정서도 확인했음.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까지 확인을 했고 관련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질문을 했지만 특수관계자 거래는 전혀 명시적으로 나타난 바가 없었음. 이 사안 자체가 대기업 회장의 형사범죄에 연루되어서 조직적으로 감사인을 속였던

사안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명백하게 꼭 취했어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과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보제공이용자 측면에서는 채권단 이외에 특별하게 이해관계인이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사실 그다지 크지 않다고 사료가 됨.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형사사건에서도 콜옵션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형사재판에서는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 (보고자) 그 부분은 공정위나 법원이나 동일하게 판단을 했는데 공정위에서 조사를 할 때 국내 30개 증권사에 동일한 조건의 BW에 대해서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를 해봤는데 어느 증권사도 이런 조건의 BW는 인수할 수 없다고 답변했었음.

○ (위원) 진술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치(value)를 논의할 수 있지만 실제 행사가능성이 없다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일단, 특수관계자 주식미기재와 관련해서 회사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함.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조치는 좀 과한 것 같음. '과실'로 조치할 필요가 있고, 예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리위 수정의견에 동의함.

- (위원) 저는 OOOOOO(주)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는 '고의'로 원안에 동의를 함. 그리고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듦.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리고 결국은 산업은행에서 승인을 한 건이기도 해서 저는 감사인은 '과실'로 보는 것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임. OOOOOO(주)도 마찬가지로임.
- (위원) BW회계처리는 이면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고의' 원안에 동의함.
- (위원) 이면거래를 통해서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보존받는 거래가 숨겨져 있고 그것을 은폐할 목적이라면 지적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당위에 해당되는 회계처리가 그 당시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위원) OOOO(주) 2017년도 BW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회계처리였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하겠음.
- (위원장) 그렇다면 이 안건은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OOOOOO(주) 관련해서 감사인 측은 '과실'로 OOOO(주) 관련해서는 '고의'를 유지하되 회사에 대한 검찰고발이 아닌 검찰 통보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는 중요도를 2단계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함.
- 의결 제64호는 원안의결하고, 제60호, 제61호, 제62호, 제63호는

각각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제64호는 원안의결, 제60호, 제61호, 제62호, 제63호는  
각각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65호 『(주)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회사로 이해관계가 많지  
않고 또 오류발생 이후 한 6년 이상이 경과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정조치 요구는 생략하는 것이 어떨지?

○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임.

○ (위원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정요구 생략하는 것은 가능한지?

- (보고자) 저희들이 회사가 최근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회사 쪽에 자진정정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제65호 안건은 시정요구 조치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보고안건 제7호 『OOOOOOO OOOO·OO OO O OOOO OO』를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통합관리체계 중점점검 관련해서 일정 규모에 따라서  
상장법인을 감리할 수 있다는 혜택(benefit)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점검결과 규모는 크지만 사  
실상 별개의 독립체(entity)들을 모아 놓은 것 같은, 전혀 통  
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분  
해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 (보고자) 통합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법인 감  
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서 최고 등록취소조  
치까지 가능하고 감사인지정제외점수 부과 제도도 도입되어  
있음.

○ (위원) 감사인감리할 때 회계법인의 지배구조도 점검을 하는지?

- (보고자) 등록요건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대표이사 등 경  
영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지배구조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요건이 있음.

○ (위원) 저는 다른 의견 없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8호 『○○○○○○○○○○ ○○○○○○○○○ ○○○○·○○○○ ○○』를  
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지적률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측면  
에서 보면 회계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계품질이 계  
속 나빠지는 것 아니냐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음. 결국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줄어야 감리업무의 효과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이기에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봄.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4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